

문: 本人은 市內 某「빌딩」의 電氣責任者입니다. 貴火災保險協會에서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데 있어 特히 電氣部門에 關한 點檢에 對해서 內容을 알고 싶습니다.

參考로 本人이 管理하고 있는「빌딩」을 紹介하면 層數가 16層이고, 受電電壓은 22,900V이며 契約容量은 500KW입니다.

(서울 中區 乙支路 2街 姜乙元)

답: 質問을 하신 분이 電氣를 專門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세삼 말씀드릴 必要가 없겠지만, 電氣工作物 使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事項이 있는데 이에 關해서는 電氣事業法 및 同施行令, 電氣工作物規程, 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規程, 電氣用品 技術基準令 等에 內容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安全點檢을 實施하는데 있어서도 電氣關係는 앞서 記述한 事項에 對해서 이를 管理하시는 분이 忠實히 지키고 계신지 與否를 發電施設, 變電施設, 配電施設 負荷 및 電氣機器別로 點檢하는 것입니다.

萬一의 境遇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이를 빠른 時間內에 鎮壓하여 被害를 最小限으로 抑制하기 爲하여 消防法施行令에 規制되어 있는 自動火災探知設備, 電氣火災警報器, 非常警報設備, 火災速報設備, 避難誘導燈 및 誘導標識, 其他消火活動上 必要한 施設로서 非常「콘센트」設備排煙設備와 消防「펌프」等의 電源設備等에 對하여 點檢을 합니다.

以上 간략하게 說明을 드렸는데 더욱 具體的인 內容에 關해서는 關係法令을 參考로 하여 주셨으면 感

謝하겠습니다.

문: 저는 4層建物 所有者로서 安全點檢結果通知書를 받았는데 通知書中에 몇가지 疑問나는 點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비닐·코드」로서 使用하고 있는 「콘센트」 配線을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하고,

둘째, 安全器의 「퓨즈」를 定格容量의 것으로 갈아 끼우라고 하셨는데 이에 對한 說明을 바랍니다.

(서울 西大門區 阿峴洞 吳理完)

답: 絶緣電線이나 「코드」는 모두 電氣의 通路로서 使用되지만 屋內의 造管物에 固定시켜 施設하는 配電線에는 굵은 銅線을 電氣絶緣體로

安全點檢 相談



감싼 絶緣電線이 使用되고 「코드」는 주로 電氣器具에 附着하여 使用하는 것이며, 이는 直徑이 0.18 乃至 0.32mm의 아주 가는 다란 銅線을 수십 가닥을 모아서 「비닐」등의 電氣絶緣物로 被覆을 하여 만든 것을 말합니다.

電氣工作物規程에 底壓屋內 配線의 使用電線에 關한 規制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特別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底壓 屋內 配線에는 直徑의 軟銅線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使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닐

·코드」를 옥내 배선으로 使用해서는 안되며 이는 直徑 1.6mm 以上의 絶緣配線을 使用한 硬質「비닐」공사나 「캡타이어·케이블」공사 또는 「케이블」工事로 하여서 「콘센트」를 使用하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에 對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電氣器具를 使用하든가 또는 不完全한 設備로 因하여 合線이 되면 室內配線에 갑자기 많은 電流가 흘러서 電線이 過熱하여 火災發生의 原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安全器는 電氣關係의 安全을 지켜주는데 重要한 役割을 합니다.

安全器에는 「퓨즈」가 들어 있는데 「퓨즈」는 漏電 其他 規定值 以上의 電流가 配線이나 電氣器具에 흘렀을 경우 「퓨즈」가 自身이 自動적으로 녹아 떨어져서 電氣의 흐름을 정지시켜 電線이나 器具를 保護하여 위험을 막아 주는 役割을 합니다.

「퓨즈」가 끊어지면 그 原因을 찾아서 이를 除去한 後에 다시 定格에 맞는 「퓨즈」로 갈아 끼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퓨즈」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것이 있어서 電線의 굵기나 使用하는 電氣器具의 容量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선정하여야 합니다.

容量은 생각하지를 않고 너무 큰 것을 「퓨즈」로 使用하거나 「퓨즈」代身에 鐵系나 銅線을 使用하면 安全器가 마비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문 : 特殊建物 소유자 賠償責任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제 4 조 제 1 항에는 「特殊建物の 소유자는 그 建物の 火災로 인하여 他人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保險金額의 범위 안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불구하고 特殊建物 소유자에게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였읍니다.

이 法律의 취지에서 불 때 特殊建物主가 法人인 때에는 그 建物 안에 있는 모든 身體 또한 그 建物 밖에서의 모든 身體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으며 個人인 경우에는 本人 및 그와 世帶를 같이 하는 親族 이외로서 自己 建物 안에 있던 모든 身體 및 建物 밖에서의 모든 身體에 대하여 賠償責任이 있다는 규정이 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特殊建物 안에서 發火하여 特殊建物 안에 있던 모든 身體 중 損害를 입은 身體 또한 연소의 영향에 의하여 建物 밖에서 있던 모든 身體에 입힌 損害에 대하여는 發火한 特殊建物の 소유자에게 損害賠償責任이 있게 되며 그 發火가 自己의 過失에 의한 것이든 또 他人의 過失에 의한 것이든 혹은 自己나 他人의 과실없는 원인에서 發生한 경우를 막론하고 損害를 입은 身體에 대하여 全的으로 賠償責任이 있다고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번지에 있는 5層建物에서 發火하여 그 建物 안에 있는 他人의 身體에 損害를 입힌

뒤에 이 불이 계속해서 近處에 있는 數棟의 家屋을 延燒하여 그 안에 있던 身體, 또는 行人에 마저 영향을 주어 身體에 損害를 입힌 경우에는 自己建物 안에 있던 身體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은 물론 建物 밖 다른 家屋을 延燒한 과정에서 또는 行人들에게까지 영향을 입힌 身體損害에 대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過失이 있을 때에, 한하여 賠償責任이 있음을 규정한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 마저 완전히 배제해 버린 즉 過失의 有無에 관계없이 賠償責任을 지워 놓은 것이 이 法律에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으며, 強行性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火災保險 相談



特殊建物 소유자 賠償責任 조항이 하나의 強行규정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周知하는 바 數年 안에 있었던 高層「빌딩」 혹은 興行場에서의 火災로 인하여 많은 數百의 身體損害를 보았으며 그때마다 賠償을 치르는데 있어 法律上 保險制度가 미비했기 때문에 身體價値의 最低額이나마 妥協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과 같은 過去의 例를 완전히 清算하기 위해 特殊建物主에 대한 賠償責任을 過重하게 지워 놓음으로써 特殊建物主의 安全管理의 責任을 추궁한 것이 되었고 同時에 消火設備를 促求하여 건

물관리의 機能化를 期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高層建物에서의 發火를 未然에 防止하는 同時 만일의 事故時에는 최저의 身體가치나마 法律이 정한 규정에 의해 自動적으로 補償되는 데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特殊建物 소유자의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는 保險期間中 事故回數에 아무 制限이 없는 것이며 또한 事故當 損害賠償하는 限定數도 없는 것이요, 다만 一人當 補償額을 死亡의 경우 50만원, 負傷인 경우는 최고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症狀에 따라 査定하는 것으로 施行승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特殊建物 소유자가 身體損害賠償責任特約이 붙은 火災保險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自己 소유의 特殊建物에 대한 財産損害額 즉 時價全額을 補償하였을 경우는 實損害補償의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요, 同時에 自己 아닌 他人의 身體損害에 대하여도 이 保險證券에 의해서 소정의 賠償責任額을 保險者가 담당하게 되므로, 建物主의 身體損害賠償責任問題는 일단 해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 賠償責任만으로써 損害를 입은 身體에 만족한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問題는 民法 제 750조와 제 751조 규정을 참작해 두는 것도 後日을 위해 有益한 것으로 봅니다.

要는 위 法에서의 특징은 無過失責任의 경우도 賠償責任이 있다는 것이 되겠으며 그 責任을 限定額까지 保險會社가 도맡게 되는 것입니다.

(損害保險共同事務所 제공)